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신 찬 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3-36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 의 자 : 신찬호, 전철규, 김현진,
조기만, 최동철, 박학용,
김성한, 박성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설 및 결빙 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나. 협조부서 :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다. 입법예고 : 2023. 2. 27. ~ 3.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공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설 및 결빙 시 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주변과 통행로에 강설로 인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락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2조 관련)

		관리번호	0000과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m ²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연 번	기구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